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주요 스포츠 경기대회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 〉
■ 김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05호)

2026.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복 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보편적 시청권 개요	4
가. 개념 및 도입 배경	4
나. 현행법상 관련 규정	6
다. 해외 주요국 입법 사례 및 동향	10
2. 개정안 주요 내용 및 검토 의견	14
가.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방안(안 제76조제4항·제5항 신설 등)	14
나.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등(안 제76조의3제1항 및 제2항)	36
다. 중계방송권 계약 관련 자료 제출의무 등(안 제76조의6 신설)	41
라. 부칙: 시행일 및 적용례	4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현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3. 6.

다. 회 부 일 : 2026. 3.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주요 행사를 ‘국민 관심행사등’으로 고시하고, 해당 행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국민이 해당 행사를 무료 또는 과도한 추가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송수단 확보 의무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일정 비율 이상의 가시청 가구를 확보한 유료방송사업자가 국민 관심행사등을 단독 중계하는 것이 가능하고, 지상파 직접수신 가구, 도서산간 지역 주민, 디지털 취약계층 등 일부 국민의 시청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문화적 기본권에 기초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제도하에서는 중계방송권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행정당국에 사전에 제출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중계권 재판매 협상이

나 시정조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이로 인해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중재 및 제재 기능의 실효성이 제약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관심행사등의 공적 성격에 비추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편적 시청권 보장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계방송권 계약의 사전 제출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편적 방송수단의 정의 및 보편적 시청권 보장 의무 명확화(안 제 76조제4항·제5항 신설)

보편적 방송수단을 “국민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으로 정의하고, 올림픽·월드컵 같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 특히 필요한 행사에 대하여 “국민 전체 가구의 95퍼센트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함. 이 경우 한국방송공사가 운영하는 지상파방송 및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통한 실시간 중계를 포함하도록 함.

나. 보편적 시청권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규정 정비(안 제76조의3)

국민관심행사등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가 발생한 경우 금지행위의 중지, 실시간 중계 이행, 중계조건의 변경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시정조치 명령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함.

다. 중계방송권 계약의 제출 의무 및 관리체계 신설(안 제76조의6)

중계방송권자등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기간과 금액, 중계 범위 등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제출자료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및 중계권 거래의 공정성 확보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은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함.

**라. 자료제출 위반에 대한 제재 및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76조의6제4항
· 제5항 및 부칙)**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과태료 산정 시 위반기간, 계약 규모 및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함. 또한 이 법 시행 이후 방송되는 국민관심행사등에 관한 중계방송권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 체결 시기와 관계없이 제76조제4항·제5항 및 제76조의6제1항을 적용하도록 함.

Ⅲ. 검토의견

1. 보편적 시청권 개요

가. 개념 및 도입 배경

- 현행법에 따른 “보편적 시청권”이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1990년대부터 KBS, MBC, SBS 지상파 3사는 ‘코리아 풀’을 형성하여 올림픽, 월드컵 등 주요 스포츠 경기대회의 중계방송권 공동 계약을 통해 주요 스포츠 경기대회를 공동 중계해오며 국민이 무료로 주요 스포츠 경기대회를 시청할 수 있는 보편적 시청권이 자율적으로 보장되어 왔음.¹⁾
 - 과거 지상파 3사가 ABU(Asia-Pacific Broadcasting Union) 회원국으로서 ABU의 중개를 통해 월드컵과 올림픽의 중계방송권을 공동으로 계약하던 관행이 ‘코리아 풀’ 체계로 자리잡게 되었음.
- 그러던 중 케이블방송채널 Xports를 소유하고 있던 IB스포츠의 중계권 독점으로 국내 보편적 시청권 보장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었음.

1) 다만, '96년 KBS의 AFC아시안컵 중계권 단독계약, '98년 MBC의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단독중계, '06년 SBS의 밴쿠버 올림픽 등 중계권 독점계약 등 코리아 풀 체계가 작동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 IB스포츠가 2006~2012년 동안의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경기와 아시아축구연맹(AFC) 축구경기의 중계권을 독점하게 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큰 경기를 더이상 지상파방송사를 통해 무료로 시청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 논의 당시 지상파방송사들은 주로 지나친 중계권료 폭등을 막고 국민들에게 인기 스포츠 경기를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근거를 내세우며 제도 도입에 찬성하였고,
유료방송 등 뉴미디어 플랫폼 사업자 등은 지상파방송 독과점 가속화와 자유로운 시장경쟁 저해 우려를 근거로 반대하였음.
- 논의가 계속된 결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행사에 대하여는 소득이나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누구나 시청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²⁾이 2007년 이루어졌고,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 도입과 함께 공동계약·순차편성 권고, 금지행위와 시정조치 등 관련 제도가 신설되었음.

2) 법률 제8301호 (2007.4.27. 시행)

나. 현행법상 관련 규정

- 현행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일반 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심의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방송사업자·시청자 의견 청취를 거쳐 아래의 체육경기대회들을 ‘국민관심행사등’으로 정하고 있음.

- ①동계/하계올림픽
- ②FIFA 월드컵 축구경기(男/女)
- ③동계/하계아시안게임
- ④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국가대표 야구경기
- ⑤월드컵 예선 포함 아시아축구연맹(AFC) 및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주관 국가대표 축구경기(男)
- ⑥친선경기 포함 축구국가대표 평가전(男)

-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함)은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위 열거된 국민관심행사등 중 ①,②에 대하여는 국민 전체가구의 90% 이상, ③,④,⑤,⑥에 대하여는 75%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됨.³⁾

- 또한, 현행법 제76조의3에는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로서 방송사업자나 중계방송권자등이 직접 하거나 제3자에게 중용하여서도 안되는 금지행위가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방미통위는 자료제출 요청, 출입 조사 및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규정된 금지행위 >

- 중계방송권자등이 가시청 가구 수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편적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확보된 보편적 방송수단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을 실시간 방송하지 아니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나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뉴스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 화면을 방송사와 IPTV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 다음으로, 현행법 제76조의4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등에게 중계방송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고, 제76조의5는 방송사업자가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하는 경우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채널별·매체별로

3)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 행사」 (방통위고시 제2016-14호)

제3조(국민관심행사등의 종류) 국민관심행사등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1.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하계 올림픽과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로 한다.
2.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75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하계아시아경기대회,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AFC(아시아축구연맹) 및 EAFF(동아시아축구연맹)가 주관하는 경기(월드컵축구 예선평합), 양 축구협회간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평가전(친선경기 포함)으로 한다.

순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①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고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한다)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방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의2(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①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관심행사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둔다.

②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7인 이내로 위촉한다.

③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계방송권자등으로서 국민 전체가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구가 국민관심행사등을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이하 “보편적 방송수단”이라 한다)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중계방송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을 보편적 방송수단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뉴스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 화면을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를 하였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를 하였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중계방송권의 총계약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4(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계방송권 계약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

제76조의5(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등) ①방송사업자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을 사용하는 경우 과도한 중복편성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널별·매체별로 순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채널별·매체별 순차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 다만,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도입된 2007년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종편PP의 등장, 유료방송 가입률 급증 등 사정 변경이 현행 법령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다. 해외 주요국 입법 사례 및 동향⁴⁾

- 보편적 시청권 관련 해외 입법례 및 정책 동향은 아래와 같음.
-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수정헌법 제1조의 원칙에 따라 보편적 시청권 보장 등 방송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위헌 소지가 높음.
 - 지난 1975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⁵⁾가 보편적 시청권 보장 차원에서 일정 기간 지상파방송사가 정기적으로 중계하던 스포츠 경기는 유료 방송사가 독점 중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칙⁶⁾을 제정한 바 있으나, 해당 규칙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연방항소법원에서 위헌결정을 받아 무효화 되었음.
- 유럽연합(EU)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를 국민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는 원칙 하에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에서 보편적 시청권을 명시하고 있음.
 - 지침은 주요 스포츠 경기 중계는 누구나 구독료 등 추가 비용 없이 방송 수신 가능한 FTA(Free-To-Air) 사업자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보편적 시청권의 구체적 보장 방법은 EU 각국에 위임하고 있음.

4) 한국미디어정책학회. (2024) 해외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제도 분석 및 국내 제도 발전방안 연구

5)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6) FCC's Cable Television Syndicated Program Exclusivity and Anti-siphoning Rules

- 영국은 1996년 「방송법」과 「텔레비전방송규정」에서 국가적 관심 경기와 행사를 차등적으로 구분하여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법제화하였음.
 - 95%의 가시청 가구 수를 만족시키는 무료 지상파방송을 통해 국민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어야 하는 ‘A그룹’ 경기와, 그 외 방송사도 중계권을 획득할 수 있으나 하이라이트 및 재방송 등을 지상파방송사에 제공하여야 하는 ‘B그룹’ 경기로 구분하여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있음.
 - 또한, 2024년 미디어법 개정으로 OTT 등 디지털 플랫폼과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도 보편적 시청권 규제 대상에 포함하여, 유료 독점 중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프랑스는 2000년 「커뮤니케이션법」 개정을 통해 본국 가구 수의 85% 이상 무료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사를 ‘우선 방송사’로 지정하여 해당 조건에 벗어나는 사업자의 독점 중계를 제한하고 있음.
 - 즉, 유료 방송사가 중계권을 확보하더라도 전체 가구의 상당수가 무료로 볼 수 있는 지상파 채널에서 방송되지 않는 한 독점 중계를 금지하고 있음.
 - 프랑스 또한 최근 파리 올림픽 등을 거치며 무료 보편 서비스의 범위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논의를 지속 중임.

- 독일은 1991년부터 「주간 방송협약」에 따라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올림픽·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경기의 중계방송 프로그램은 전체 가구의 3분의 2 이상이 수신 가능하도록 제
공하여야 함.
- 2020년 제정된 「주간 미디어협약」 또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벤트의 경우 암호화하거나 특별 요금으로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적어도 하나의 무료 및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한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호주는 방송서비스법이 제정된 1992년부터 전체 인구의 50% 이
상이 시청할 수 있는 무료 공영방송사나 상업 지상파방송사를
중계권 우선협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Anti-syphoning rule).
- 지난 2024년 Apple TV, Disney+ 등 글로벌 플랫폼의 중계권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과된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사의 중계권 획득 전에 OTT나 스트리밍서비스가 중계권을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될 수 있는 지상파방송에 중계권 관련 우선권을 보장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또한, 구매한 방송권을 독점적으로 유지하거나 방송하지 않으려는 경우 중계권을 타 방송사에 양도하거나 지상파방송으로 공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중계권을 우선 확보한 방송사의 중계방송을 장려하기 위한 규칙도 제정하였음(Anti-hoarding rule).

- 일본은 보편적 시청권 관련 법률 규제 대신 공영방송인 NHK와 주요 민영방송사 연맹(JBA)이 ‘재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과도한 중계권료 인상을 억제하면서 배분을 통해 국민 전반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있음.
 - 다만, 일본에서도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Abema TV’가 월드컵 전 경기 중계권을 단독 확보했던 것, 최근 일본에서 개최 중인 WBC가 넷플릭스 단독 중계된 것을 계기로 보편적 시청권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정리하면, 표현의 자유 보장과 시장 원리에 입각하여 스포츠 중계권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미국이나 자율적으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일본을 제외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은 우리나라와 같이 보편적 시청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가시청 가구가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사가 그 외 방송사에 비해 중계권 협상 우선권을 가지며, 영국, 호주 및 프랑스는 OTT 등 플랫폼서비스 또한 보편적 시청권 규제에 포함시키려는 논의를 진행 중임.

2. 개정안 주요 내용 및 검토 의견

가.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방안(안 제76조제4항·제5항 신설 등)

□ 주요 내용

- 개정안은 국민이 별도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보편적 방송수단”을 정의하고, 올림픽과 월드컵 경기(男) 등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하여는 국민 전체 가구(TV수상기 미보유 가구 제외)의 95% 이상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되, KBS와 MBC를 통한 실시간 중계를 반드시 포함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① ~ ③ (생략)	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④ 이 조 및 제76조의3에서 “보편적 방송수단”이라 함은 국민이 별도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말한다.</u>
<u><신 설></u>	<u>⑤ 중계방송권자등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국민관심행사등 중 동·하계 올림픽과 FIFA(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등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 특히 필요한 행사에 대하여는 국민 전체 가구의 95퍼센트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에</u>

현행	개정안
④ 방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u>따른 한국방송공사가 운영하는 지상파방송 및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통한 실시간 중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텔레비전 수상기를 보유하지 아니한 가구는 전체 가구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u> ⑥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 -----. ⑦ -----제6항의----- ----- ----- -----.

□ 검토 의견

- 개정안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 특히 필요한 국민관심행사등으로 동·하계올림픽과 FIFA(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이하 “월드컵”이라 함) 중 성인남자 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를 예시로 들면서, 텔레비전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 중 95%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 이는 현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 고시」”라 함)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가시청 가구 비율을 상향 조정한 것임.
- 또한, 개정안은 보편적 방송수단을 확보할 때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함)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MBC”라 함)를 통한 실시간 중계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이처럼 개정안은 FIFA월드컵(男)과 동·하계 올림픽 경기에 대하여는 전국민의 95% 이상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공영방송인 KBS와 MBC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중계방송에 접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 지상파 실시간 중계 포함 및 중계방송권 제공 의무에 대한 검토

- 개정안에 따라 국민관심행사등을 반드시 KBS·MBC를 통해 실시간 중계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경우 ①무료인 지상파방송을 통해 중계방송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이 향상될 것이며, ②특정 채널이 아닌 다양한 채널을 통해 비인기종목이 방송될 수도 있으므로 시청자의 채널선택권이 제고될 것으로 보임.
- 헌법재판소 결정⁷⁾에 따르면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케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의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방송매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논의할 때 방송사업자의 자유와 권리뿐만 아니라 수신자의 이익과 권리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일정 부분의 규제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첫째, 개정안은 국민관심행사등의 실시간 중계방송을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방송을 공공재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7) 헌법재판소 2001.5.31. 선고, 2000헌바 43 [구 유선방송관리법 제22조제2항제6호 중 제15조제1항제1호 부분 위헌소원]

○ ‘지상파방송’은 국민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경합성⁸⁾과 비배제성⁹⁾을 띠는 공공재(Public goods)에 해당하고,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은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 한해 제공되므로 비경합성과 배제성을 띠는 클럽재(Club goods)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올림픽·월드컵 경기 등을 공공재로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할 것인지, 유료방송 등을 통해 이용 제한이 가능한 클럽재로 취급하여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할 영역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올림픽·월드컵 경기를 공공재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은 ①국가 대표 선수의 훈련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므로 국가대표 선수가 출전하는 올림픽·월드컵 경기의 중계방송권을 특정 방송사가 사유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②스포츠로 인한 국가적 위상 제고와 사회 통합 기능을 고려할 때 특정 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접근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음.

○ 따라서, 국민관심행사등을 공공재로 보아 지상파방송사를 통해 반드시 무료로 국민에게 공급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도

8)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는 데 제한을 받는 성질을 말하며, ‘비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재화 소비에 제한이 없는 성질을 말함.

9) ‘배제성’이란 소비자가 재화를 소비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하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비배제성’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소비자의 재화 소비를 막을 수 없거나 매우 어려운 것을 말함.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종전 KBS·MBC·SBS가 자율적으로 코리아 폴을 형성하여 중계권 공동계약을 체결해 온 관례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 조항에 KBS와 MBC만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KBS·MBC와 달리 SBS는 공영방송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 ①KBS·MBC와 같이 지상파방송사로서 국민이 무료로 방송 접근이 가능하며, ②SBS도 ABU회원으로서 코리아폴 협상에 참여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③다양한 채널을 통한 국민의 채널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는 SBS를 포함한 다양한 지상파방송사를 함께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임.

<지상파방송사업자 현황>

구분			방송사업자
지 상 파 방 송 사 업 자	종합편성 (33개사)	- 중앙지상파방송(3)	KBS, MBC, SBS
		- 지역MBC(16)	부산MBC, 대구MBC, 광주MBC, 대전MBC, 전주MBC, 춘천MBC, MBC충북, 제주MBC, 울산MBC, 강원영동MBC, 경남MBC, 목포MBC, 여수MBC, 안동MBC, 원주MBC, 포항MBC
		- 지역민방(10)	부산방송(KNN), 대구방송(TBC), 광주방송(KBC), 대전방송(TJB), 울산방송(UBC), 전주방송(JTV), 청주방송(CJB), 제주방송(JIBS), 강원민방(G1), OBS경인TV(OBS)
		- 라디오방송(3)	부산영어방송, 광주영어방송, 티비에스(tbs-eFM)
		- 지상파DMB(1)	YTNDMB

지 상 파 방 송 사 업 자	보도 전문편성 (1개사)	- 라디오방송(1)	YTN라디오
	전문편성 (10개사)	- 교육전문(1)	EBS
		- 음악방송(2)	경인방송, 국악방송
		- 종교방송(5)	기독교방송, 불교방송, 가톨릭평화방송, 원음방송, 극동방송
		- 영어(1)	국제방송교류재단
		- 교통(1)	도로교통공단
	계		44개사

- 셋째, 개정안이 국민관심행사등 중계방송권 확보와 관련하여 OTT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함.
- KBS와 MBC의 실시간 중계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개정안에 따를 경우, OTT사업자나 유료방송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중계방송권을 확보하더라도 중계방송권 재판매와 관련하여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협상력 약화를 초래하여 사실상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방송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스포츠 중계방송권 협상에 관한 규제 신설에 앞서 OTT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임.
-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잠재적 사업자의 사익 침해 가능성과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필요성 사이 법익의 균형성 측면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넷째, 개정안은 “보편적 방송수단”을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별도의 비용”의 범위에 현재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일부 공영방송에 대한 수신료, 국가 예산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통한 지원과 같은 간접적인 비용도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만약, 이와 같은 간접비용이 “별도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이미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는 방송사업자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EU의 사례와 같이 “국민관심행사등의 시청을 위한” 추가적인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당 자구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가시청 가구 비율 기준에 대한 검토

- 현행법 제76조의3은 국민 전체 가구 중 가시청 가구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로 재위임¹⁰⁾하고 있음.
-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경기대회가 충족해야 하는 가시청 가구 비율을 법률 대신 국민적 관심 정도, 시대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고시에 탄력적으로 규정할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으나, 그 비율의 범위나 하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위임하는 현행법 규정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가시청 가구 비율을 충족하는 보편적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것이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해 시정명령, 자료제출 요구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함에도 수범자는 법률 규정만으로는 금지행위의 요건인 기준 비율

10) 「방송법」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계방송권자등으로서 국민 전체가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구가 국민관심 행사등을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이하 “보편적 방송수단”이라 한다)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3(금지행위) ① 법 제7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을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심지어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행정규칙 발령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가시청 가구 비율을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95%로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은 금지행위 기준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한 취지가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가시청 가구 비율 기준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임.
- 첫째, 개정안의 95%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은 아닌지와 관련하여 방송사업자의 가시청 가구 비율 현황과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가시청 가구 비율을 90%에서 95%로 상향할 경우 해당 스포츠 경기대회에 대한 중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방송사업자가 지나치게 한정될 것으로 예상됨.
- 구체적으로, 지상파방송사인 KBS, MBC, SBS 등과 달리 종편 PP 등 국민관심행사등을 주로 중계해온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가시청 가구 비율은 계산 산식과 방법에 따라 95%의 비율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임.
-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보고서」 11)에 따르면, 유료방송 가입

11)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보고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0조·제41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로서 국가데이터처 승인 일반·조사 통계에 해당함.

률에 기반하여 계산한 종편PP 등 유료방송의 '25년 기준 가시청 가구 비율은 약 96.3%¹²⁾로 추정되며,
최근 추세가 ('21) 97.7% → ('22) 97.2% → ('23) 97.1% → ('24) 96.8% → ('25) 96.3% 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년 내 95% 비율에 미달하게 될 가능성도 있음.

- 또한, 영국은 95%, 프랑스는 85%, 독일은 약 66.6%(3분의 2), 호주는 50%의 가시청 가구 비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¹³⁾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따라서, 본 개정안에 의해 중계방송권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사업자의 사익 침해 가능성과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법익의 균형성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둘째, 가시청 가구 비율 계산 시 TV수상기 미보유 가구를 모수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TV수상기를 보유한 가구로 한정하여 가시청 가구 비율을 계산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중계방송권자등은 TV수상기 보유 가구에 대한 중계방송 보급 비율만 충족시키고자 할 것이므로, TV수상기 미보유 가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 저해될 소지가 있다고 보임.

12) 참고로, 96.3%의 수치는 안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TV수상기 미보유 가구를 제외하여 계산한 결과이며, 모수에 TV수상기 미보유 가구를 포함할 경우에는 약 91.4%로 추산됨.

13) 본 검토보고서 p10~13 참조

- 참고로,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TV수상기 미보유 가구 비율은 ('21) 3.5% → ('22) 4.6% → ('23) 4.7% → ('24) 5.1% → ('25) 5.1% 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반대로 TV수상기 없이도 상당수 국민에게 중계방송을 제공할 수 있는 뉴미디어사업자 입장에서 TV수상기 보유자만을 대상으로 가시청 가구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TV수상기 미보유 가구에 데스크톱PC, 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통해 중계방송이 보급되더라도 가시청 가구 비율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OTT를 포함한 뉴미디어사업자의 가시청 가구 비율 수치는 실제보다 과소평가된다는 문제가 있음.

- 참고로, 스마트폰 보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 '24년부터 TV수상기 보유율을 넘어선 상황임.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TV수상기 보유율	96.5%	95.4%	95.3%	94.9%	94.9%
스마트폰 보유율	93.4%	93.4%	94.8%	95.3%	96.0%

자료: 방송매체이용행태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국민관심행사등의 종류 규정에 대한 검토

- 「국민관심행사등고시」 제정 당시 가시청 가구 수 비율 90%를 확보해야하는 행사로 동·하계올림픽과 월드컵을, 가시청 가구 수 비율 75%를 확보해야하는 행사로 아시안게임, 야구WBC, 국가대표 축구 A매치를 규정하고 있었으며, 2016년 개정으로 그 기준이 구체화되었음.

고시 제2009-32호 (2009.11.20. 시행)	고시 제2016-14호 (2016.12.28. 시행)
제3조(국민관심행사등의 종류) 국민관심행사등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1.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u>동·하계 올림픽과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으로 한다.</u> 2.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75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u>아시안게임,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축구 A매치(월드컵축구예선포함)로 한다.</u>	제3조(국민관심행사등의 종류) 국민관심행사등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1.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u>동·하계 올림픽과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로 한다.</u> 2.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75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u>동·하계아시아경기대회,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AFC(아시아축구연맹) 및 EAFF(동아시아축구연맹)가 주관하는 경기(월드컵축구 예선포함), 양 축구협회간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평가전(친선경기포함)으로 한다.</u>

- 참고로, 영국 또한 국민적 공감 및 관심도와 국민 통합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국민관심행사를 A그룹(무료 지상파 통한 생중계 의무)과 B그룹(유료방송 통한 생중계 가능하나, 하이라이트/재방송 등은 지상파에 제공 의무)으로 구분하여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있음.
- 다만,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여 보장하고자 하는 국민관심행사 등 종류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임.
- 첫째, 현행 「국민관심행사등고시」에 규정된 여러 스포츠 경기 대회 중 강화된 보편적 시청권 보장 기준을 적용할 대상을 규정한 방식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임.
- 개정안은 제76조제5항의 적용 대상을 ‘동·하계올림픽과 FIFA(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등”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 특히 필요한 행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등”으로 인하여 그 범위가 확대될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정하는 주체, 절차 및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개정안에 따라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 특히 필요한 행사로 포함될 경우 방송사업자의 중계방송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개정안에서 “등”을 삭제하여 대상을 올림픽과 월드컵으로 한정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거나, 일정한 지정 절차나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에서 성인남자 국가대표팀과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을 달리 취급한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국민관심행사등고시」 제3조제1호¹⁴⁾에 규정된 국민관심행사등 중 동·하계올림픽과 월드컵 중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만을 예시로 열거하고 있음.
- 가시청 가구 비율 기준을 95%로 강화하여 법률에 상향 규정된 성인남자 국가대표팀과 달리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경기는 시행령 및 고시로 위임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셋째, 2026년 4월 현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법률안 중 현행법령상 국민관심행사등의 규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방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김현의원안 (제2217305호)	한민수의원안 (제2217353호)	한정애의원안 (제2217474호)	이훈기의원안 (제2217585호)	최민희의원안 (제2217983호)
「국민관심행사등고시」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민관심행사등 중 ‘동·하계올림픽’과 ‘월드컵 중 성인남자 국가대표팀 축구경기’만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	국민관심행사등의 종류와 등급 구분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로 위임함	일반 국민이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시청할 필요가 있는 행사를 방송 미디어통신 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계·하계올림픽대회와 월드컵의 개막전/준결승전/결승전 및 국가대표팀 경기를 포함하도록 함	국민관심행사등과 구분하여 특별히 중대성이 인정되는 행사를 고시하도록 함

14) 동·하계 올림픽과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 보편적 방송수단 정의 신설에 대한 검토

- 개정안은 제76조제4항을 신설하여 국민이 가입료 등 추가적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수단을 “보편적 방송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에 국민 누구나 무료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법체계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보편적 방송수단” 정의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과 같이 국민이 별도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보편적 방송수단으로 정의할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KBS 등 지상파방송사도 보편적 방송수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임.
- 또한, 개정안 제76조에서는 “보편적 방송수단” 정의가 활용되지 않고 있고, 현행법 제76조의3제1항제1호에서는 이미 보편적 방송수단을 중계방송권자등으로서 국민 전체가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구가 국민관심행사등을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으로 정의하여 약칭하고 있으므로 정의를 신설하려는 위치 및 문구 또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임.
- 따라서 입법 효율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서 공통적으로 새로이 정의하려는 보편적 방송수단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고, 신설 위치도 수정할 필요가 있겠음.

□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①지상파방송사에 의한 실시간 중계 포함 의무화와 관련하여, 중계방송권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과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중계 협상 요청을 받은 KBS, MBC가 방송수단 확보 의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②보편적 방송수단 정의와 관련하여, ‘별도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한 방송수단으로 규정하는 대신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시청이 가능한 방송수단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 한국방송공사(KBS)는 지상파방송을 통한 실시간 중계 의무화 시 ①공영방송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②국민의 수신료가 특정 방송사업자의 중계방송권 재판매를 통한 수익을 보장하는 데에 사용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③IOC나 FIFA에 대한 국내 방송사업자의 협상력 약화로 인한 국부 유출 가능성, ④중계방송권자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중계권 협상 압박에 의해 KBS가 합리적인 중계방송권 구매자로서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MBC**는 ①개정안을 통해 방미통위가 공영방송에게 중계방송권 구매를 강요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사적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②상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의 적자 등 손실로 인한 배임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또한, 중계권 재판매를 중심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은 중계권료 폭등으로 인한 국부 유출과 그에 따른 보편적 시청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보기 어렵고, 특정 사업자가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거액을 지불하여 확보한 중계권료 부담을 공영방송사에 전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적 거래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사태의 재발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임.

○ **SBS**는 개정안에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핵심 문제인 국제 스포츠 중계권료 부담 구조와 재원 문제의 해결 방안이 담겨있지 않고, 현행 구조에서는 중계를 통한 상당한 손실이 방송사에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중계권료에 대한 합리적 부담구조,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안, 방송사·OTT·온라인사업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코리아 풀' 확대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JTBC**는 ①보편적 시청권 정의와 관련하여 주요 경기를 추가 금액 지불 없이 시청 가능한 방송수단 등 보다 구체적으로 수

정할 필요가 있고, ②95%의 가시청 가구 비율은 변화된 스포츠 중계환경을 고려할 때 방송사업자 외에도 온라인서비스를 통해서도 중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방송만을 기준으로 비율을 상향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③중계권자가 KBS와 MBC의 실시간 중계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방송사업자의 중계권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방송시장 내 경쟁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재판매 협상 결렬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 또한, 방미통위의 적극적인 재판매 협상 중재 권한 부여, 방송사업자의 손실 보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온라인 사업자 포함 시 중계권 독점으로 간주하지 않는 제도 등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주)조선방송은 ①개정안에 따른 보편적 방송수단 정의는 지상파 방송을 통한 송출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유료방송 없이 지상파만 이용하는 가구가 3.5%에 불과한 상황에서 가시청 가구 비율 기준만 상향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는 입장이고, ②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핵심 중계권은 지상파사업자만 구매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정책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보편적 시청권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주)매일방송**은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나,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시청 행태 변화를 고려할 때 일률적 규제보다는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기능을 존중하는 방향이 방송산업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에 부합할 것이며,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 폭넓은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채널에이**는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경기 행사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가시청 가구 비율 상향과 지상파 실시간 중계 의무화 등은 방송사의 편성권과 중계권자의 협상 범위, 방송사 간 사적 계약을 통한 중계방송권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연합뉴스TV**는 개정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 **한국방송협회**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①중계권 확보 비용 증가와 방송광고매출 감소로 인해 중계권 투자 회수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계권료 부담 구조와 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 마련 없이는 보편적 시청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어렵고, ②KBS와 MBC의 중계 강제는 독점적인 중계권을 확보한 방송사업자가 제시하는 과도한 중계권료나 계약조건을 KBS·MBC로 하여금 수용토록 하므로 독점 중계방송권자의 협상력을 극대화될 것이고, 수신료 등 공적재원으로 그

이익을 보전해주는 형태로 고착화될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임.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은 존중되어야 하나, 헌법 제23조에 따른 재산권 역시 보호받아야 하므로 KBS·MBC 등 지상파방송사에 중계방송권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거나, KBS와 MBC의 실시간 중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보편적 방송수단 정의 시 ‘별도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 시청 가능한 채널은 지상파방송 중 매월 수신료를 지불하는 방송사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표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종합 검토의견

- 종합하면, 보편적 시청권을 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스포츠 경기대회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지상파방송사의 실시간 중계 포함의무 및 중계방송권 제공 의무의 필요성, 가시청 가구 비율 기준의 적정성, 국민관심 행사등 종류 규정 방식의 타당성과 함께, 최근 우리나라의 방송 시장 및 매체 이용 현황, 보편적 시청권 보장 관련 해외 입법 사례, 방미통위와 방송사·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나.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등(안 제76조의3제1항 및 제2항)

□ 주요 내용

- 개정안은 금지행위를 직접 행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등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실시간 중계 이행과 중계조건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 ----- -----제76조에 따른 국민관심행사등의-----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를 하였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한----- ----- -----중지, 실시간 중계 이행, 중계조건의 변경----- ----- -----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검토 의견

- 현행법상 중계방송권의 재판매 등 거래나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의 주요 스포츠 경기대회 방송 접근권이 침해될 우려로 인해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가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최근 올림픽·월드컵 중계방송권 독점 상황과 관련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부족이 지적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제3자에게 금지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는 제외하고 직접 금지행위를 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게 실시간 중계 이행이나 중계조건 변경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게 실시간 중계 이행과 중계조건 변경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이행강제 규제 수단 및 방송편성의 자유 제한과의 비례성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함.
- 개정안과 같이 구체적인 시정명령 종류를 규정할 경우, 제7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보편적 방송수단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

송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6조의3제4항에 따라 해당 중계방송권 총계약금액 5%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시정명령 권한은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정명령 권한 확대는 신중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특히, 보편적 시청권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07년 이후 시정명령은 단 1차례¹⁵⁾만 행하여졌다는 점에서 새로운 종류의 시정조치 도입이 필요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또한, 시정명령이 방송 편성의 자유 및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의 구체적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고 수범자인 방송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계조건의 변경에 관한 시정명령이 현행법 제76조의3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떠한 금지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인지 그 목적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⁶⁾

15) 2010년 월드컵을 앞두고 KBS, MBC, SBS에 대하여 제7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인 “중계방송권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되었으며, 해당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라 SBS에는 19억 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음.

- 둘째, 제3자에게 금지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벌 체계상 통일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
- 개정안과 같이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를 시정명령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현행법 제76조의3제3항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사무소·사업장 출입 조사 권한이 부여되던 것 또한 직접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제3자에게 금지행위를 하도록 종용하여 시정명령을 한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음.
- 셋째, 관계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김현의원안과 관련하여, ①방송사업자의 대리인 등 제3자를 이용한 규제 회피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현행과 같이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 또한 규제가 필요하며, ②시정조치의 유형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열거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중계조건의 변경’은 각 호의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방송사업자 간 계약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실시간 중계의 이행’은 현행법에 따른 ‘금지행위의 중지’에 이미 포섭되는 개념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1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한 중계조건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으며, 중계조건을 변경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 또한 없다고 답변하였음.

- 이를 종합하면, 개정안에 대하여 금지행위를 행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방미통위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실시간 중계 이행과 중계조건 변경 요구 등 새로운 시정조치 도입의 타당성, 제3자에게 금지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대한 규정 정비 필요성, 방미통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중계방송권 계약 관련 자료 제출의무 등(안 제76조의6 신설)

□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중계방송권자등은 중계방송권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기간, 총계약금액, 재판매 조건 등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제출받은 자료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비공개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6조의6(중계방송권 계약의 제출 및 보호) ① 제76조에 따른 중계방송권자등은 해당 중계방송권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u>1. 계약 당사자</u> <u>2. 계약 기간</u> <u>3. 총계약금액</u> <u>4. 중계범위 및 매체별 권리 내용</u> <u>5. 재판매 조건 및 제한사항</u> <u>6. 그 밖에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보편적 시청</u>

현 행	개 정 안
	<u>권 보장 및 중계권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계약내용의 보완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u> <u>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u> <u>⑤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의 기간, 계약 규모 및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u>

□ 검토 의견

- 개정안은 방송사업자가 중계방송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 자료를 3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제출받은 자료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영업비밀에 속하는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하려는 것임.
-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중계방송권 계약 관련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사 단독으로 지나치게 높은 중계방송권료를 지불하고 계약하는 등 약탈적 가격 설정(Predatory Pricing)을 사전에 방지하고 중계방송권 계약 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중계방송권자등이 계약한 사항 중 계약 기간, 총계약금액, 재판매 조건 등의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방송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중계방송권자등의 계약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바,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것이 영업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더라도 계약 사항을 정부나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향의 규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방송사업자와의 중계방송권 계약 상대방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축구연맹(FIFA) 등 국제기구라는 점에서 비밀유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의 제출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함.
- IOC나 FIFA 등 국제기구 입장에서 국가별 계약 조건이 유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비밀유지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중계방송권자등 입장에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막대한 위약금이 청구되거나 향후 중계방송권 입찰이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음.
- 또한 국제기구와의 계약 사항과 국내법이 배치될 경우 통상 문제로 번질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셋째,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과태료 수준과 비교하여 제재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의 신설 위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제9장(벌칙)을 두어 징역, 벌금 등 벌칙 규정과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 근거를 일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체계를 고려할 때 개정안 제76조의6제4항·제5항은 제9장(벌칙)의 제108

조(과태료)¹⁷⁾로 이동하여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법 제108조가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수준은 3천만원 이하인데, 개정안은 중계방송권 계약 관련 자료 제출 위반을 이유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상한이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넷째,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중계방송권 계약을 제출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이를 의무화할 경우 계약·영업의 자유 침해 및 통상 문제가 우려된다는 입장임.
- JTBC는 방미통위가 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받더라도 중계방송권 관련 분쟁을 실제로 해결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라는 입장임.
- (주)조선방송은 중계방송권 계약 관련 정보는 사업자의 핵심적인 영업상 기밀에 해당하고, 특히 계약 금액이나 권리 범위 등 세부 조건은 향후 중계방송권 확보 과정에서 방송사업자의

17) 「방송법」

제10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각 호 생략)

②제9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협상력과 경쟁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제 스포츠 이벤트 중계권 입찰 당시 계약 조건에 대하여는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되는 사례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이를 종합하면, 중계방송권 계약 내용의 제출을 통한 약탈적 가격설정의 사전 예방 및 계약 내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라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계약 관련 자료제출 의무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는 없는지, 해외 주요국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 IOC·FIFA 등 국제기구와의 계약 내용을 현실적으로 제출 가능한지 여부, 방미통위와 여러 방송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라. 부칙: 시행일 및 적용례

□ 주요 내용

- 개정안 부칙은 동 개정안을 공포한 날 즉시 시행하면서, 개정안 시행 전에 체결된 중계방송권 계약에 대해서도 개정안 시행 이후 방송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하고자 함.

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방송되는 국민관심행사등에 관한 중계 방송권 계약에 대하여는 그 계약 체결 시기와 관계없이 제76조제4항 및 제5항, 제76조의6제1항을 적용한다.

□ 검토 의견

- 개정안 부칙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송되는 국민관심행사등에 관한 중계방송권 계약 내용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가시청 가구 비율 95%를 준수하도록 하며, 반드시 KBS·MBC의 실시간 중계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향후 다가오는 스포츠 경기대회에 대하여 KBS와 MBC를 통한 무료 실시간 방송 등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임.
- 참고로, 2026년 4월 기준으로 가까운 시일 내 예정된 국민관심 행사등로는 '26년 6월 북중미 월드컵(男), '26년 9월 아이치-나고야 하계 아시안게임, '27년 6월 브라질 월드컵(女) 등이 있고, 2032년까지의 동계·하계올림픽과 월드컵 등에 대하여는 이미 중계방송권 계약이 체결된 상황임.

< 2026년 이후 예정된 국민관심행사 및 중계권 계약 현황 >

행사명	행사 연월	중계방송권자등	비 고
밀라노 동계올림픽	2026.2.	JTBC	
202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2026.3.	TVING	TVING 재 판매
		지상파 3사(KBS, MBC, SBS), CJ ENM(tvN)	
북중미 FIFA월드컵(男)	2026.6.	JTBC	
아이치-나고야 하계 아시안게임	2026.9.	에이클라미디어그룹(SPOTV)	
브라질 FIFA월드컵(女)	2027.6.	JTBC	

행사명	행사 연월	중계방송권자등	비 고
LA 하계올림픽	2028.7.	JTBC	
알마티 동계 아시안게임	2029.	미 정	
알프스 동계올림픽	2030.2.	JTBC	
스페인/포르투갈 FIFA월드컵(男)	2030.6.	JTBC	
도하 하계 아시안게임	2030.11.	미 정	
(개최국 미정) FIFA월드컵(女)	2031.	JTBC	
브리즈번 하계올림픽	2032.7.	JTBC	
(개최지 미정) 동계 아시안게임	2033.	미 정	
유타 동계올림픽	2034.2.		
사우디아라비아 FIFA월드컵(男)	2034.		
리야드 하계 아시안게임	2034.		

- 개정안 부칙에 따라 빠르면 '26년 6월에 개최되어 방송될 예정인 북중미 월드컵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는바, 부칙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가시청 가구 비율 상향하려는 안 제76조제5항 및 계약 관련 사항 제출 의무를 규정하는 안 제76조의6제1항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개별적 법률로서 평등원칙에 비추어 타당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헌법재판소는 ‘개별사건법률’을 개별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인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지만, 개별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¹⁸⁾

- 2026년 4월 기준 가시청 가구 비율 상향 등의 적용대상인 월드컵, 동·하계올림픽에 대한 중계방송권을 체결한 방송사업자가 JTBC로 유일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즉시 시행하면서 기 체결된 계약에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률의 적용 대상이 특정한 개별사건에 국한되어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따라서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인지와 관련하여, 개정안을 통해 초래되는 사적 불이익과 이를 방치함으로써 초래되는 보편적 시청권 측면의 공적 불이익을 비교형량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가시청 가구 비율 상향하려는 안 제76조제5항을 중계방송권 계약이 기 체결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소급입법금지 원칙’이란 기존 법질서에 대한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법을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임.

18) 헌법재판소 1996.2.16. 선고,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2조 위헌제청등]

-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구법에 의해 형성된 신뢰보호에 의해 입법형성권이 제한됨.¹⁹⁾

- 헌법 제13조는 소급입법금지 원칙의 일환으로 형벌불소급 원칙(제1항)과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제한(제2항)을 규정하면서, 특히 법률에 의해 형성되는 재산권 또한 소급입법을 통해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제2항)하고 있음.

「대한민국헌법」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중계방송권자등이 종전 「국민관심행사등고시」에 따른 90%와 75%의 가시청 가구 비율 규정을 고려하여 중계방송권계약을 체결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법 개정을 통해 가시청 가구 비율을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보아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기 형성된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19) 헌법재판소 2006.6.29. 선고, 2005헌마165,314,555,807, 2006헌가3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제16조등위헌확인등]

소급입법을 통해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과거의 법적 상태에 의하여 부여된 구체적 권리에 대하여 진정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침해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존재하는 제한적인 경우에 행해져야 하는바,²⁰⁾ 개정안 부칙 제2조에 따른 조치가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진정소급입법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면 부진정소급입법을 통해 침해되는 법적 신뢰보다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이 중대한지에 관한 이익형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셋째,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 체결된 계약에 소급 적용하려는 부칙이 이미 체결된 중계방송 계약의 내용 자체를 변경하거나 그 계약의 효력을 소멸·변경시키는 것은 아니고, 개정안에 따른 의무를 장래를 향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한다면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방송사업자의 신뢰보호 이익을 비교·교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국방송공사(KBS)는 부칙 제2조를 통해 계약이 완료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까지 개정안이 소급적용될 경우,

20) 헌법재판소 1999.4.29. 선고, 94헌바37 [택지소유상한에 관한법률제2조제1호나목등위헌소원]

①월드컵 개최가 임박하여 공사는 예산, 편성, 제작 등 사전 준비가 미비한 상황이고, ②불리한 계약조건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③뉴미디어 재판매가 종료되어 수익 창출 및 적자 보전 가능성이 제한됨에 따라 중계방송권 구매가 공사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MBC**는 계약 체결 시기와 관계없이 제76조제4항 및 제5항, 제76조의6제1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은 실질적인 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임.

- **JTBC**는 이미 중계방송권 확보가 끝난 부분에 대한 소급 적용에는 반대하는 입장임.

○ 이를 종합하면, 개정안에 대하여 향후 다가오는 스포츠 경기대회에서 보편적 시청권을 확실히 보장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가시청 가구 비율 상향과 계약 관련 사항 제출 의무 등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개별사건법률로서 평등원칙과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는 없는지, 방미통위와 여러 방송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226
